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6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서범수 · 김소희 · 이현승
박충권 · 한지아 · 우재준
김장겸 · 조배숙 · 조은희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명세서 등을 작성·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51조의3 제9항에서 같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의2제4항 중 “제8항까지를”을 “제9항까지를”로 한다.

제51조의3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를 “제13호카목,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사목 중 “경우”를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5항에”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로 한다.

카.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3호카목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제6호의2 중 “제66조제5항에”를 “제66조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9항, 제45조의2제4항 및 제51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

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정지 처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51조의3 제9항에서 같다)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u>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u>제8항까지를</u> 준용한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9항까지를</u> -----.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u>

	<u>하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u> <u>자는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u> <u>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u> <u>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u> <u>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u> <u>를 할 수 없다.</u>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	---. -----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	-----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
<u>제15호</u> 또는 제16호에 해당하	<u>13호카목, 제15호</u> -----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
여야 한다.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13.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 -----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 차. (생략)

<신설>

14. ~ 16.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신설>

경우(카목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아. ~ 차. (현행과 같음)

카.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
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제13호카목에 따른 범죄경력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보에 한정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
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같은
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생략)	<u>제외한다)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및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u>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 ----- -----. 제75조(청문) ----- -----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6조제6항에----- ----- 7. (현행과 같음)
---	--